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

■ 신정훈·윤종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94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4
가. 부동산백지신탁 도입 배경	4
나. 개정안 검토	10
[참고]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신정훈·윤종오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0.
3. 회부연월일 : 2025. 1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 및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직원 등은 본인과 배우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현금 등의 재산을 현행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또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대상재산 중에서 특히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도록 함.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공직자의 과다 보유나 과도한 시세 차익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과 같은 매각이나 백지신탁의 의무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이를 통해 사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부동산은 투기대상이 아닌 생활의 필수재·안정적 주거를 위한 기본 재화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 전환이 공직사회부터 이루어질 때 부동산 정

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높아짐.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투기 의혹이 주로 부각되며 정책역량 검증보다 도덕성 논란과 소모적 공방이 반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적 검증제도인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으로 인사검증 과정의 불필요한 논란과 정치적 소모를 줄일 수 있음.

이에 재산 공개대상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직무관련성 심사, 취득제한, 백지신탁 해지, 이해충돌 직무 관여금지, 직위 변경 신청 등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18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제도와 같이 재산공개대상자 및 국토교통부 등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이 부동산 또는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실거주 외에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제도(이하 “부동산백지신탁”이라 함)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장의3 신설 등).

《개정안에 따른 부동산백지신탁제도 주요 내용》

1.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안 제2장의3 신설)

가. 부동산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 및 의무(안 제14조의18 신설)

□ 대상공직자

- 등록의무자 중 재산공개대상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대상부동산 및 예외부동산

-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부동산(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은 제외)

□ 매각·부동산 백지신탁 의무

- 3개월 이내에 대상부동산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

나. 부동산 직무관련성 심사(안 제14조의19 신설)

□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소속)

- 위원 9명(위원장 1명 포함): 임기 2년, 1회 연임

□ 부동산 직무관련성 심사

- 심사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심사·결정
- 해당 부동산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직무관련성 판단

다. 기타 의무

- 부동산취득의 제한(안 제14조의20 신설),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안 제14조의21 신설),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안 제14조의25 신설) 등

2. 기타 부동산백지신탁제도 관련 제재(제6장 징계 및 벌칙)

- 징계 등(안 제22조),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안 제25조), 출석거부의 죄(안 제26조), 비밀누설의 죄(안 제28조), 부동산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안 제28조의3), 과태료(안 제30조)

2. 검토의견

가. 부동산백지신탁 도입 배경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재산등록 및 공개(제2장),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제2장의2), 선물 신고(제3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제4장)의 제도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재산등록 제도는 공무집행에 있어 그 영향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공직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감사·세무 등 일부 분야는 4급 미만 공무원),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에게 동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 중 법률에서 정하는 재산을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재산 증식을 억제하고 공직윤리 확보를 도모하고 있음.

또한, 재산등록의무자 중 고위공직자¹⁾에 대해서는 공무집행에 있어 그 영향력이 큰 점을 고려하여 등록된 재산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제10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있음.

1) 현행법 제10조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는 퇴직자를 제외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동일함.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의 등록·공개 공직자 및 대상재산》

□ 재산등록 공직자(제3조제1항 각 호)

◦ 등록의무자

-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감사·세무 등 일부 분야는 4급 미만 공무원),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 등록대상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 재산공개 공직자(제10조제1항 각 호)

◦ 등록의무자

-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일부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 공개대상

- 등록된 재산 공개

□ 등록대상재산(제4조)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 재산, 비영리법인 출연 재산과 외국 소재 재산 포함
※ 단,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 가능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골동품·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주식매수선택권

◦ 가상자산

자료: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산공개 외에도 보유재산 중 상대적으로 변동가능성이 높은 주식과 가상재산에 대하여 주식백지신탁(제2장의2), 주식·가상재산의 거래내역 신고(제6조의2) 등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로 인하여 해당 공직자는 사생활의 자유나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받게 됨.

《헌행법상 고위공직자의 보유재산에 관한 의무 및 기본권 제한》

공직자 의무	대상공직자 및 대상재산	제한되는 기본권
재산등록	◦ 4급 이상 공무원 등(제3조) ◦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제4조)	◦ 사생활의 자유 ²⁾
재산공개 (제10조)	◦ 고위공직자(1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등) ◦ 등록된 재산	◦ 사생활의 자유 등
주식백지신탁 등 (제2장의2)	◦ 재산공개대상자, 재정부·금융위 4급 이상 ◦ 주식 ※ 직무관련성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백지신탁 의무 해제	◦ 재산권(처분) 등
주식·가상재산 거래내역 신고 ³⁾ (제6조의2)	◦ 재산공개대상자 ◦ 주식·가상재산	◦ 사생활의 자유 등

2)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2 등 위헌확인[2025. 10. 23. 2021헌마1598]

----“국가가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적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설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544)----

3)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식 및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내역 신고 시 신고대상 거래의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특히, 주식백지신탁의 경우 주식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 보유주식의 처분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이 상대적으로 크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요》⁴⁾

□ 취지

- 고위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여 공·사의 이해충돌 가능성 사전 방지('05~)

□ 대상

- 재산공개대상자, 재정경제부의 금융관련 사무국 소속 4급 이상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하 '공개대상자등')

□ 요건

-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의무

-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 / 다만, 주식백지위에서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시 계속 보유 가능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는 청구인·등록기관의 장에게 통지되나 법 제6조의2제3항,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4제6항 등에 따라 비공개

□ 직무관여금지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날 등까지 보유 주식과 관련하여 직무관여금지

자료: 인사혁신처

- 4)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재정경제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각각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

부동산백지신탁은 공직자의 재산 관련 이해충돌 우려가 주식의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지신탁의 범위를 부동산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2005년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통해 주식백지신탁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부터 논의된 바 있음.

2005년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직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개최된 공청회⁵⁾에서는 주식백지신탁의 도입으로 인해 고위공직자의 자산형태가 부동산으로 이동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1세대 1주택 이외의 매매를 제한하는 방법,⁶⁾ 실수요 이외의 부동산을 백지신탁하는 방법⁷⁾, 부동산 거래내역을 공개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었음.

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5) 2005.5.2.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

6) 관련하여,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임기간 중 1세대 1주택 외 부동산은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박재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0255)

7) 관련하여,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시에 본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실수요임을 해명하도록 하고, 소유부동산이 실수요임을 해명하지 못하거나 해명의 설득력이 없는 경우 이를 백지신탁하도록 한 후 신탁의 해지시에 신탁 당시가 아닌 취득 당시 가격의 원리금만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병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2086)

그 과정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국민의 불신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견해, 재산권의 침해정도보다 공익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견해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으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매매나 소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고 과도하다는 견해, 개인의 자기 결정권, 재산권, 평등권에 대한 침해라는 견해, 주식과 부동산의 성질이 다르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견해 등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어 부동산은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제21대 국회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공직자윤리 확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부동산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3건의 법률안⁸⁾이 발의되어 논의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임기말 폐기 되었음.

8)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2091호), 윤재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2271호), 심상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2641호)

나. 개정안 검토

개정안은 공직자의 재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백지신탁 제도의 적용 대상을 부동산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부동산백지신탁의 의무대상자는 재산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부동산매각대상자”라 함)으로 정하고,

대상부동산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부동산으로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14조의18제1항).

둘째,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 매각 의무 또는 부동산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주식백지신탁과 유사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안 제14조의19).

그 밖에 부동산취득의 제한(안 제14조의20),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 금지 등(안 제14조의21),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안 제14조의25)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고, 사실상 다주택 또는 부동산 보유자가 선출직 공무원으로 출마하는 경우 또는 고위공직자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검증기준과 인사기준으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반면, 공직자 개인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강제하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라는 입법 목적에 비해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며, 현행법상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⁹⁾의 보완·강화나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등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입법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재산권의 핵심인 처분권을 제한·강제한다는 측면에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임.¹⁰⁾¹¹⁾

참고로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이뤄진

-
- 9)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 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및 관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0)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에서도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부동산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강행으로 부과하는 사례는 없으며, 예외적으로 미국이 이해충돌상황에서 직무회피, 직위변경, 면제 등과 함께 선택적 수단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신탁이 강제 의무는 아님
- 11) 이에 관해서는 정연주,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법학연구 24.3 (2021), 257-259쪽 참조

2012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단순합헌 의견에서는 부동산은 주거·영업 등 개인의 생존에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그 처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더 클 수 있다고 보았음.

※ **헌재 판례**(2010헌가65, 2012. 8. 23.)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러 형태의 재산권 중 오로지 주식에 대해서만 매각 및 백지신탁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것이 주식을 소유한 국회의원을 다른 형태의 재산권,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식과 부동산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① 부동산은 주식에 비하여 그 가격이 비교적 고액이고 용도 또한 다양한 관계로 수탁자가 시장에서 환가하기가 용이치 않아 강제처분을 전제로 하는 백지신탁의 대상으로 부적절하며,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부동산은 백지신탁의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있다. ② 부동산은 주식에 비하여 주거 또는 영업 등 개인의 생존에 더 직접적인 형태로 연관되어 있어, 그 처분을 일률적으로 강제할 경우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더 클 수 있다. ③ 변동성 측면에서도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훨씬 더 정책의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부정행위의 소지가 높고 따라서 규제 필요성도 더 크다.

따라서 개정안은 심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라는 공익의 중대성과 그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법률 개정을 전제로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부동산백지신탁의 주체가 되는 공직자 및 관련 기관의 범위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재산공개대상자 외에 추가되는 적용 대상자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자산가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조세(국세·지방세)정책, 금융정책 외에 교육정책, 각종 개발계획, 산업단지 조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목·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 등 다양할 수 있는바, 제시된 부동산백지신탁 대상기관의 범위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¹²⁾

둘째, 부동산백지신탁의 객체인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인 부동산은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 건물의 소유권·전세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¹³⁾ 백지신탁의 대상 부동산으로서 지상권 또는 전세권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백지신탁에서 제외되는 요건으로서의 “실제 거주”의 개념이 불분명한바, 해당 개념과 관련된 사항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12) 20.7.10.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계부처에는 행정안전부, '19.12.16.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국세청도 포함되어 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는 국토부·기재부·농림부·환경부 고위공무원이 포함됨.

13) 현행법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제4조제2항제1호)”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최초재산등록 신고서)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 건물의 소유권·전세권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셋째, 부동산백지신탁과 관련된 절차 등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은 부동산백지신탁과 관련하여 3개월 이내의 처분기한을 두고 있는데, 부동산이 고가(高價)의 물건이라는 점이나 복잡한 권리 관계 및 세금 관계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환가에 따른 손실없이 매매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3개월이라는 처분기한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¹⁴⁾

부동산(토지·건물)은 그 용도가 다양하고¹⁵⁾ 부동산 관련 정책의 영향력이 광범위하여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보유 부동산과의 직·간접적인 연관 관계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직무관련성에 관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부동산백지신탁은 재산권의 핵심인 처분권을 제한·강제하는 것으로 부동산은 주식보다 개인의 생존에 더 직접적인 형태로 연관되어 있어

14) 주식백지신탁의 경우에도 환가성이 높지 않은 비상장 주식이 기한 내에 매각되지 못해 사실상 보관신탁의 형태로 운영되다가 임기 종료시 반환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垓)·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시설 24. 국방·군사시설 25. 방송통신시설 26. 발전시설 27. 묘지 관련 시설 28. 관광 휴게시설 2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본권 침해 소지가 높다는 점, 실거주의 개념¹⁶⁾이나 대상부동산으로서의 권리의 범위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 부동산은 권리관계¹⁷⁾와 세금 관련 고려사항¹⁸⁾이 복잡해 단기간에 처분이 곤란하고 환가성(換價性)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행정안전부는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여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

16) 예를 들어, 인사 이동으로 인한 관사 거주, 주거 편의로 인한 서울-세종 거주 등의 경우 실거주 판단 여부가 불분명함

17) 공동지분, 임·대차 계약, 담보권 설정, 그린벨트 內 토지 등

18) 실거주 기간 충족 여부, 보유기간에 따른 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세) 제한, 신탁 동안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처리, 과세표준구간의 변동 가능성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u>주식백지신탁</u>,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u><신 설></u> <u><신 설></u>	제1조(목적) ----- ----- ----- -----<u>주식백지신탁</u>·<u>부동산백지신탁</u>----- ----- ----- ----- ----- ----- --. 제2장의3 부동산의 매각 또는 신탁 등 제14조의18(부동산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부동산매각대상자”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부동산(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게 된 날(부동산매각대상자가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부동산매각대상자가 된 날 또는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19제6항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26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19제7항 또는 제14조의26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

자신탁(이하 “부동산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부동산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이하 제14조의24까지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음 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할 것. 다만, 3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부동산의 처분 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14조의2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② 부동산매각대상자는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에 따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부동산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신 설>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제14조의19(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① 부동산매각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의,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 부동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⑥ 부동산매각대상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18제1항에 따른 부동산 매각 의무 또는 부동산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날(부동산매각대상자가 된 날,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부동산매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때에는 부동산매각대상자가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부동산매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⑦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은 해당 부동산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⑨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매각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⑩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⑪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등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의18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⑫ 누구든지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결정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제1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0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제3항에 따른 허가”는 “제12항에 따른 허가”로, “등록의무자”는 “부동산매각대상자”로 본다.

⑭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0(부동산취득의 제한) ① 제14조의18 제1항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신 설>

<신 설>

부동산매각대상자와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부동산매각대상자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부동산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동산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의18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조의19를 준용한다.

제14조의21(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① 제14조의18제1항 또는 제14조의20제2항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부동산매각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공개 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한 후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부동산매각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이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4조의18제1항 또는 제14조의20제2항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2(신탁상황의 보고 등) ①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부동산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한 내용을 다음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

<신 설>

<신 설>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중
에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다
음 해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처음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
이 완료된 경우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
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3(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임직원에게 시정명령 또는 징계처분 등 적
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장에게 요
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4(부동산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
지) ① 부동산백지신탁의 신탁자는 관할 공
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요
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기관에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부
동산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
다.

1. 제1항에 따른 매각요구를 받아 부동산백
지신탁의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2.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 부동산매각
대상자가 부동산매각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부동산백지신탁 신탁자의 직위가 전보 등
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로서 제14조의19
제7항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
회로부터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
·운용 중인 부동산 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4. 이해관계자로서 부동산백지신탁의 신탁자
가 되었으나 사후에 재산등록사항의 고
지를 거부하거나 혼인 등의 이유로 그
이해관계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부동산백지신탁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해지사유 및 그 해 1월 1일(부동산백
지신탁이 설정된 해에 해지된 경우에는 부
동산백지신탁이 설정된 날)부터 해지된 날
까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한 내용
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신 설>

다. 이 경우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었으면 전년도에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의25(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① 부동산매각대상자는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부동산이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의 재산상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동산매각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매각대상자는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백지신탁 부동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부동산매각대상자가 백지신탁한 부동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경우에는 매 분기 동안 해당 부동산과 관련한 직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내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신고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26(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조의19에 따른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14조의19제7항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3. 심사과정의 심의·의결 절차 등에 관한 위법이 발견되었을 경우

<신 설>

<신 설>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 9. (생략)

10.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1. ~ 18. (생략)

제14조의27(부동산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① 제14조의18제1항에 따라 부동산 매각의무 또는 부동산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부동산매각대상자는 그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사항을 명시하여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직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사항과 무관한 직위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가 변경된 부동산매각대상자가 제14조의19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18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매각 또는 부동산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의18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 이행기간은 직위 변경 신청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의28(부동산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① 제14조의18제1항 또는 제14조의20제2항에 따라 부동산 매각 또는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의 체결 사실을 신고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22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관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징계 등) -----

-----.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1조제2항, 제14조의4제6항 및 제14조의18제5항에서-----

11. ~ 18.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8의2. 제1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u>
<u><신 설></u>	<u>18의3. 제14조의18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제14조의19제6항에 따른 부동산의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u>
<u><신 설></u>	<u>18의4. 제14조의19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u>
<u><신 설></u>	<u>18의5. 제14조의20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u>
<u><신 설></u>	<u>18의6. 제14조의21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u>
<u><신 설></u>	<u>18의7. 제14조의21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경우</u>
<u><신 설></u>	<u>18의8. 제14조의24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백지신탁을 해지한 경우</u>
<u><신 설></u>	<u>18의9. 백지신탁한 부동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5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부동산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25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u>
19. ~ 21. (생략)	19. ~ 2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24조의3(부동산백지신탁 거부의 죄) 부동산 매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18제1항 또는 제14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 ----- ----- ----- -----같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부동산백지신탁----- -----제11조제2항, 제14조의4제6항 및 제14조의18제5항에서----- -----포함한다), 제14조의5제10항 또는 제14조의19제10항에----- ----- ----- -----

한다.

제26조(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비밀누설의 죄) ①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의3(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

<신설>

제30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2항제2호(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조의5제1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

제26조(출석거부의 죄) -----
-----제11조제2항, 제14조의4제6항 및 제14조의18제5항에서-----

제28조(비밀누설의 죄) ① -----
----제11조제2항, 제14조의4제6항 및 제14조의18제5항에서-----

② -----제11조제2항, 제14조의4제6항 및 제14조의18제5항에서--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3(부동산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①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21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동산매각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21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제11조제2항, 제14조의4제6항 및 제14조의18제5항에서-----
-----포함한다), 제14조의5제1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2. ~ 3의2. (생략) <신설> 4.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신설> <신설> 7. ~ 11. (생략) ④ · ⑤ (생략)	<u>1항제2호 및 제14조의19제11항제2호에--</u> ----- 2. ~ 3의2. (현행과 같음) <u>3의3. 백지신탁한 부동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5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부동산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25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u> 4. (현행과 같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제14조의20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u> <u>6의3. 제14조의24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사람</u> 7. ~ 11.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여야 하는 공직자는 이 법 시행일부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